

# 프레이트·포워더의 機能과 役割에 關하여

—主로 國際프레이트·포워더를 中心으로—

李 鍾 仁

## On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the Freight Forwarder

—Primarily on the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by

Lee Jong In

.....<目 次>.....

- |                           |  |
|---------------------------|--|
| I. 序 論                    | IV. 프레이트·포워더의 機能                           |
| II. 프레이트·포워더의 歷史的 背景      | V. 프레이트·포워더의 役割                            |
| III. 프레이트·포워더의 概念         | 1. 프레이트·포워더의 利用에 따르는 利点<br>2. 各國의 이에 對한 規制 |
| 1. 프레이트·포워더의 定義           | VI. 結 論                                    |
| 2. 海陸複合運送 主体者로서의 프레이트·포워더 | 参考文献                                       |
| 3. 프레이트·포워더의 運送責任         |  |

### Abstract

Export shipments pass through various stages, including contact with the activities or services of the following enterprises: railroads or motor carriers, ocean carriers, steamship agents, ship brokers, freight brokers, customs brokers, insurance brokers or underwriters, truckmen, warehousemen, harbor railroads and foreign consulates. The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embodies in his organization the essential combination of functions that utilize all required facilities and services in international traffic. He relieves the exporter of the multitudinous details involved in traffic and assists the importer with despatch and economy.

This paper suggests that as containerization replaces conventional fragmented transportation systems by one fully integrated method, the door-to-door transport through the interaction of land and sea modes, the forwarding industry has become an integral part of our trade and commerce, and that the importance of the forwarding industry to our

foreign commerce should be recognized by all those involved in building overseas trades.

## I. 序 論

運送貨物의 物的流通(physical distribution)의 效率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이를 담당하는 諸機關의 合理化 내지는近代化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니트·로드(unit load) 方式 및 複合運送方式이 철저히 推進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流通機關에는 運送(鐵道, 트럭, 海運, 航空), 荷役, 保管(倉庫), 通信 등이 있으며, 이들 諸施設의 効率化는 물론 이와並行하여 貨物의 包裝과 單位를 單一化하고, 여러 流通機關을 通할 때 원활하게 連結될 수 있도록 貨物外裝을 規格化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 유니트·로드 方式은 流通cost를 節減하기 위해 發端된 것으로 國內流通에 適用되는 물론 國際間의 貿易에도 適用되어, 컨테이너라이제이션(containerization)에 의한 海陸複合運送이 등장한 것이다.

즉 一定한 規格의 컨테이너의 使用을前提로 한 사람의 運送人이 全區間의 운송을 一貫하여 引受하는 運送시스템에 의할 경우 荷主의 立場에서 보면, 단 한 사람과의 運送契約으로 責任진 그 사람에게 集中될 것이므로 매우 便利할 것이다.勿論 이 경우의 運送人은, 누가 全運送區間에 걸친 全通船荷證券(through B/L)을 발행하는 가에 따라 決定되므로, 船舶會社 뿐만 아니라 鐵道會社, 트럭회사, 航空會社, 프레이트·포워더, 컨테이너貸與會社 등 어느 것이어도 相關이 없다.

이와같이 輸出入貨物에 대한 運送시스템이 컨테이너化하여 運送形態가 全運送區間에 걸쳐 一貫運送되는 國際複合運送으로 發展됨에 따라, 輸出入物動量의 신속한 輸送力を 確保하기 위해, 海運港灣廳은 1974年 11月 26個 業體의 海上貨物運送周旋業者에 대해 신규로 免許를 發給하였다.<sup>1)</sup> 이는 1980年代에 이르러 貿易量의 현저한 增加를 意識한 所產으로서 매우 현명한 對備로 풀이되지만 아직도 國際間 輸出入의 貨物運送過程에서 一貫運送責任을 지는 國際複合運送에 대한 認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一部의 貿易業者가 있어, 이를 國內運送에만 限定·解釋하여 트럭運送業者로 看做하는 事例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프레이트·포워더의 歷史가 日淺한 데에도 原因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貿易者間의 認識과 利用上의 利点, 人力과 經費 및 時間의 節減 등으로 반드시 複合運送시스템을 통한 船積과 運送의 利用度가 先進國에서와 같이 增加할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本稿는 프레이트·포워더의 보다 確實한 概念을 밝히고, 機能을 알아보며, 이것이 貿易 및 海運에 미치는 効果에 대해 考察함으로써, 關係者들의 이에 대한 認識을 提高시키고자 하는데 目的이 있다.

한편, 프레이트·포워더라 하면一般的으로 運送周旋業者를 가르키는 것인데 이呼稱은 陸上, 海上, 航空等 各分野에 따라 조금씩 그 뜻을 달리 할뿐만 아니라, 그 概念이나 法的地位도 各國의 法制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 포워더의 경우, 外國의 포워더와 代理店契約을 체결하여 國際複合運送의 主體者로서 業務를 行하고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主로, 이 國際프레이트·포워더(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 II. 프레이트·포워더의 歷史的 背景

13世紀初 베니스의 全盛期에 상당량의 貿易이 알프스 山脈을 넘어 독일 其他 유럽諸國과 이루어졌으며, 運送代理人 이었던 프래처(fratcher)라는 中間人的 서비스를 利用하였다. 이 프래처의

1) 海上貨物運送周旋者의 免許條件은 業體當 3,000만원 이상의 資本金을 確保하고, 外國의 國複合運送人과의 代理店契約의 締結, 렌페스, 컨테이너·야드, 保税장치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馬車는 商人과 그의 貨物을 運送했고, 路上強盜로부터 人命과 財產을 보호받기 위해 一團의 武裝警護員의 護衛를 받았다. 그는 또한 많은 國境을 횡단할 때마다 地方稅 및 通過料를 支拂하였고 中間停車場들에서 말(馬)을 바꾸기도 하였다. 貨物은 出荷通知書(consignment note)로써 引渡되고, 商人自身이 직접 到着地에서 賣渡하였다. 이로부터 300年이 지난 1600年頃 이 프레처는 獨立業者가 되었으며, 여러가지 交易路와 交易中心地들을 잘 알고 있었고, 馬車行列을 조직하였으며, 運送代理人도 두고 貨物을 보관하는 장소도 設定하였다. 그는 또한 船荷證券을 발행하고 受荷人們로부터 運賃, 諸稅 및 販賣代價를 징수하였다.

18世紀末에 이르러 宗教的, 政治的 및 經濟的인 發展으로 因한 수차례의 戰爭을 겪고난 後에야 비로소 아무런 危險 없이 다닐 수 있는 交易路의 安全이 確保 되었다. 이즈음 商人們은 交易中心地에 安住하였으며 自己들의 営業事務所를 두었다. 交易의 원활을 期하기 위하여 運送専門家の 시어비스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 專門家들은 商人們로 하여금 새로운 市場과 販賣商品을 찾아내는데 助力함으로써 交易의 擴張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들은 手數料를 받고서 이 業務를 狹隘적으로 담당하게 되었고, 유럽全域에 自己들의 代理店網을 가지고 있었다. 鐵道가 높이게 됨과 더불어 이 專門家の 經濟的인 地位도 현저히 向上되었다. 또한 鐵道交通과 交易의 國內制限으로 말미암아, 鐵道料率과 船荷證券은 國內運送에 局限하여 發行 되었다. 이들은 철도운송에 관계되는 여러 問題와 交易에 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運賃率를 높여 除去하였고, 輸出入時 混載業務를 함으로써 海外貿易의 成長을 容易하게 하였다. 이들은 또한 國內 및 海外通商에 있어서 全通船荷證券 發行의 手配도 하였다. 이리하여, 貿易社會에 있어서 이들의 專門家로서의 위치는 商業會議所, 鐵道委員會 및 政府의 關係委員會와 같은 機關에서, 料率, 재판 및 通商에 관한 顧問地位에 選任됨으로써 認定을 받게 되었다.

유럽大陸의 地理的 및 地政學의 특징은 경제적인 發展과 活動에 항시 特殊한 活力素가 되어왔다. 알프스山脈에서 北海로 흐르는 라인江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블란서, 독일, 및 네덜란드를 通해 北海로 흐르는 國際水路이다. 다뉴브江은 豐饒의 東部로 길을 트고 있다.

換言하면, 이들同一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自國主義(particularism)의 현상이 招來되었다. 이 現象은 遺傳病과 같아 거의 모든 分野의 社會生活과 그 國家の 政治構造에 均等하게 침투하였다. 19世紀에는 아직도 많은 獨立國家와 領土가 있었다. 이와같은 通信 및 運送의 巴貝주의를 除去하기 위하여 많은 進展이 필요하였다. 逆說的으로 運貨率, 通貨, 稅金, 重量 및 容積이 모두 달라 高度의 광범위한 知識을 필요로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포워더에 利益이 되었다. 法律 및 經濟分野에 專門家들은 專屬으로 두고, 편집이 잘 된 貿易刑行物의 도움을 받으며, 地方의 및 全國의 協會를 조직함으로써 國際포워더는 地位를 확고히 하고, 顧客의 협조와 理解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가지 實務와 原則를 導入하여, 그들은 共同으로 유럽의 運貨構造와 運送体系의 現代化에 장애가 되는 여러가지 장벽을 차례로 除去해 나갔다. 商法典의 편찬이 發達한 19世紀中엽과 말엽에 이르러 顧問을 要請받게 되었으며, 이와 同時に 法令上의 만족할 만한 法的地位를 확보하게 되었다. 膨脹一路에 있던 外國貿易의 發展에 힘 입어, 그리고 技術的, 財政的 및 政治的 分野의 多樣化로 20世紀 유럽의 프레이트·포워드는 政府의 여러가지 規制를 顧客들이 잘 알도록 指導하고 世界各處에 있어서 交易의 增進되도록 힘썼다.<sup>2)</sup>

한편 美國의 경우, 포워딩業(forwarding industry)은 19世紀 後半과 20世紀 初半에 걸쳐 서서히 發展을 하였다. 第一次世界大戰 以前까지 輸出의 大部分이 뉴욕港을 中心으로 이루어졌으며, 걸로灣이나 南太平洋으로부터의 輸出貨物은 棉花뿐이었다. 따라서 西海岸에서 交易이 이루어지는 경우,

2) Alfred Murr, Export/Import Traffic Management and Forwarding, 3rd ed., Cornell Maritime Press, Inc., Cambridge, 1974, pp. 1-3.

그商品은 鐵道便으로 뉴욕港이나 뉴올리언즈港으로 운송되어 거기에서 다시 船積이 되었다.<sup>3)</sup> 大量의 貨物이 運送仲介人(freight broker)<sup>4)</sup>이라는 運送専門人에 의해 취급되었고, 이들이 最初로 出現한 것은 1815年頃이었다. 이 무렵 나포레옹戰爭을 치루고 난 後 극도로飢餓에 허덕이며, 과장된 美州大陸의 번영에 키가 솔깃해진 유럽의 移民者들이 西向定期船에 雲集하였다. 버팔로(Buffalo)와 五大湖地域을 뉴욕과 직접 연결시켜준 1825年的 이어리運河(Erie Canal)의 開通은, 보다 더 富強의 새로운 전망을 던져 주었다. 줄을 잇는 운하의 배들이 輸入品, 製品 및 移住者들을 中西部의 國境地方으로 운송을 하였으며, 그當時 클린顿·디치(Clinton Ditch)라고 불렸던 이 通路는 클레브랜드와 시카고와 같은 都市의 初期發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運河를 통하여 後日 運輸會社 및 今日의 國內 프레이트·포워더(domestic freight forwarder)의 前身인 포워더는 續속하고 遠距離의 운송을 始作하였다. 이들은 運送路의 중요한 通過地點에 支店들을 두고서, 陸路와 運河上에서 業務를 수행하였으며, 화물의 保管 및 再運送을 하고, 또 全通運貨을 부과하였으며, 貨物交換證(waybill)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또 이들은 同時に 곡물, 木材 또는 農產物과 같은 主要商品을 취급하는 去來所의 업무도 수행하였다.<sup>5)</sup>

제임스 왓트의 蒸氣機關의 발명으로 英國에 처음 鐵道가 놓이게 되었고 이消息이 바다 건너 美國에까지 口傳되었다. 따라서 美國에서는 월리암·스트리랜드와 같은 專門家를 英國에 파견하여 蒸氣鐵道에 대해 배워오게 하였다. 1820年代에 존·스티븐스는 뉴저지州와 펜실바니아州를 횡단하는 鐵道建設의 許可를 얻어 놓고 있었다. 1830年에 비로소 南캐나리아鐵道會社의 蒸氣機車가 運行을始作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時代의 歷史的인 開幕을 알리었고, 이른 바 國際프레이트·포워딩 業務가 생기게 된 것이다. 1834年 보스頓으로부터 最初의 鐵道가 놓였을 때, 월리암, 프레데릭·한센은 보스톤과 우소체스터間에 운행되는 열차의 車掌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運送業務의 새로운 概念을 創出해낸 장본인이다. 그는 3年을 하루 16時間씩 車掌으로 일한 後 보다 더 活動的인 事業으로서 積極的인 일을 찾기로 決心하였다. 1837年 뉴욕에서 休暇를 보내고 있던 中, 그는 이 일을 톤틴커피집의 主人이었던 제임스·헤일과 相議를 하였고, 여기서 그는 보스톤과 뉴욕間의 獨立된 通運會社(express service)를 設立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貨物의 保護와 取扱은 全的으로 車掌에게 委託되어 있었다. 한센은, 뉳저지汽船會社를 관장하는 한편, 뉴욕市와 프로비デン스間을 運行하는 보스頓·프로비덴스 鐵道會社의 代表에게 接近하여, 「內容物 不知」라고 荷印된 5입방피트의 나무상자의 運送權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어서 그는 또한 보스톤/뉴욕間의 運送權도 確保했다.<sup>6)</sup> 1840年初 한센은 그의 業務를 필라델피아로 擴張하였다. 곧 이어 처음으로 그는 外國으로 뻗어 나갈 수 있었다. 이 무렵 큐나드汽船會社(Cunard Line)는 리버풀과 뉴욕間을 定期運航하였고, 많은 화물이 뉴욕과 필라델피아로 向하였다. 이러한 動機로 그는 동료인 텍스터·브리감을 1840年 11月 英國으로 보내 大西洋橫斷 通運會社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外換業務를 組織化하였다. 1842年에 이르러 한센會社(Haynden & Company)는 유럽 全域에 여러 事務所를 두었다. 美州大陸이 開發되려면 많은 勞動力의 공급이 필요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서, 그들은 헤드슨江이나 이어

3) Gerald H. Ullman, *The Ocean Freight Forwarder, the Exporter and the Law*, Cornell Maritime Press, Inc., Cambridge, 1967, pp. 1-2.

4) 이 運送仲介人은 船舶을 위한 業務인 경우 船舶仲介人(ship broker)이라고도 하였으며 輸出業者를 위한 업무인 경우 貨物仲介人(cargo broker)이라고 하였다.

5) Murr, op. cit., pp. 3-13.

6) 1839年 2月 23日字 Boston Herald紙는 보스톤/뉴욕間 運行의 通運車가 商人, 仲介人, 書籍商 其他人에 關して重要하다는 內容의 題目下에 「5年間 車掌經歷을 가진 W. F. 한센이 보스톤과 뉴욕間을 過 4回 反復 運行하여, 自身이 直接 車에 탑승하여 화물을 購賣하고 代金을 回收하며, 또한 그에게 委託된 화물을 관리하고 安全하게 引渡할 것임」이라는 廣告報道가 있었다. Ibid., p. 6.

리運河船은 물론 보스톤定期船의 저렴한 船票의 確保에 의한 또는 그들의 海外駐在事務所에서 換이 음의 發行으로 換錢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集團移住에 關心의 集点을 두고 있었다. 勿論, 한편會社의 設立以後 다른 會社들도 많이 設立되어 多方面으로 運營을 하고 있었다. 이들 會社運營의 特징은 貨物의 船積과 引度에 있어서의 安全하고 신속한 業務와, 書類의 作成이나 金錢의 徵收 및 支拂과 같은 特殊한 業務이었다. 國內 및 海外通商의 不斷한 膨張으로 이 通運業務는 10年以内에 크게 白忙하여, 定規의 프레이트·포워더나 船舶仲介人과 같은 다른 運送機關도 이와같은 型의 業務을 營爲하게 되었으며, 會社들은 獨自의으로 船積代理店, 運輸會社 및 通運業務의 機能을 끗두 統合하였다. 도젯트商工人名錄의 第2部에 依하면, 1846年 뉴욕에 등록된 포워딩 및 運輸人이 27人 이었는데, 이들의 業務上 主로 ①最低運貨(minimum freight)<sup>7)</sup>을 물게 하지 않고, 적은 包裝에 대하여도 낮은 運貨의 賦課 ②及 港의 代行者 ③外國의 内陸 目的地까지의 一貫輸送 ④鐵道, 運河, 陸路 및 海上을 통한 一貫輸送에 대하여 全通運貨의 賦課 ⑤引渡時 代金의 徵收 ⑥全運船荷證券(through bill of lading)의 發行 ⑦各區 다른 重量에 대해 부과되는 全通運貨率(through rate)을 表示하는 運貨表의 發行 등의 일을 하였다.<sup>8)</sup>

1641年 第1次世界大戰이勃發함과 동시에, 美國은 近 50年동안이나 適切한 商船隊의 保有를 계울리 한것과 不足을 自覺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代價를 支拂하기始作하였다. 즉 敵國은勿論 中立國의 船舶들까지도 갑자기 寄港을 하지 않게 되어 고무, 銀銅, 鑛石, 커피 및 설탕과 같은 必要品의 輸送이 中止되었다. 목화와 담배가 南部의 여러 倉庫와 부두에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고, 機械類, 農器具 및 자동차와 같은 雜貨가 뉴욕의 부두와 창고에 쌓이게 되었으며 運貨은 하늘처럼 치솟았다. 이와같은 切迫한 轉機를 맞아, 議會는 1916年 9月 17日 商船法을 서둘러 制定하였다. 이 法制定의 두가지 目的은 海運을 助長하는 일과, 港의 諸料金, 用役 및 海運의 業務를 規制하는 일이었다.

이로부터 30年後인 1946年 2月 25日 美聯邦大陪審院은 海外 프레이트·포워딩業務를 이 法에 適用을 받도록 한 유명한 判決이 있었다. 이것이야 말로 海外프레이트·포워딩業의 大憲章(Magna Charta)이라고 看做되어야 하며, 그 理由는 이 法의 制定이 美國의 프레이트·포워더에게 큰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즉 이 商船法은 포워딩業의 運營方式과 實際에 직접적이고 깊은 聯關係를 가졌었다. 2次大戰의 突發과 함께 포워딩業은 武器貸與나 其他의 원조를 받는 外國政府들이 포워딩活動領域을 자기들의 機關안에 吸收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질 危機에 놓이게 되었다. 즉 이를 위하여 그들은 運送機關에 해당하는 그들 政府의 購買使節團을 파견함으로써, 戰後 復舊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잠재력을 포함하여, 포워더에게서 業務機會를 박탈하였다. 이의 救濟를 議會에 請願하여, 1942年 3月 14日 소위 블랜드海外프레이트·포워딩法(Bland Foreign Freight Forwarding Act)이 制定되었다. 프레이트·포워더들의 오랜 친구이자 支持者이었던 判事 블랜드의 이름을 딴 이 法은 海外프레이트·포워딩業을 海運業의 一部로 여기고 있다. 1950年 6月 1日字로 聯邦海事委員會(Federal Maritime Commission)는 行政命令 72號에 따라 포워더들에게 登錄을 하도록 하였으며 87次 議會에서는 1961年 9月 19日 公法 87-254號로 인터엔진트·오션·프레이트·포워더의 免許制를 法制化하였다.

7) 高價貨物에 대하여는 그 價格에 따른 一定率(ad valorem rate)의 운임이 賦課되며, 一般貨物에 대하여는 容積 또는 重量의 運貨建에 依하나, 용적 또는 중량이 運貨建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貨物種類에 不拘하고 B/L 1件를 單位로 特定運貨를 設定하는 수가 있으며 이를 最低運貨이라 한다.

8) Ibid., p. 6.

### III. 프레이트·포워더의 概念

#### 1. 프레이트·포워더의 定義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는 말은一般的으로 forwarding agents, shipping and forwarding agents, shiping agents, air freight forwarders 등으로 알려져 있는企業을 나타내는 總稱的인 概念이다. 이와같은 여러가지의 名稱은各自의 여러 地域에서 오랫동안 使用되어 온 것으로서, 獨自의 歷史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forwarding agents라는 명칭은 원래 鐵道貨車一台分의 貨物(CL cargo, rail carload cargo)이 되지 않는 小量貨物을 모아서(assemble) 單位貨物로 만들거나, 그 反對의 作業을 主로 하는 業者를 말하는 것으로 유럽大陸에서 생긴 것이다. 또한, shipping agents는 오늘날 主로 輸出業者를 代身하여 船積手續, 船積書類의 作成, 貨物의 本船에의 引渡 등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英國에서는 船舶會社를 위하여 船腹을 販賣하는 立場에 서서 行動하기도 한다. 이들의 一部는 지금도 船積仲介人/loading broker로서 行動하고 있다. 이와같은 傳統的인 地域的呼稱은 오늘날도 널리 使用되고 있긴 하지만, 이들 각己의 呼稱이 뜻하는 區別은 最近에 와서 暫昧해지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이러한 業者の 大部分이 貨物의 統合・分配, 컨테이너 貨物의 취급, 國際道路運送 등의 서비스 提供의 部門에서 獨立된 主體者로서 활동하고 있는 現代에 있어서는 이미 agents라는 말은 適當한것이 못된다. 어쨌든 프레이트·포워드乃至는 포워더라고 總稱되는 이들 業者は 從來보다 훨씬 더 幾은 分野에 걸쳐 活動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포워딩業務에 대하여 各己 獨自의 解釋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워딩業務가 무엇이라고 한 마디로 잘 말하거나, 正確하게 定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英國의 프레이트·포워더協會(IFF)의 規約은 「프레이트·포워더는一般的으로 理解되고 있는 포워딩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가르킨다」고 구히 抽象的으로 定義하고 있다. 그러나 英國에 있어서 現實적으로 포워딩業務를 본다면 프레이트·포워더는 「輸出業者 또는 送荷人을 代身하여 輸出貨物의 운송 내지 輸入業者 또는 受荷人을 代身하여 輸入荷物의 운송에 관여되는 業務에 종사하고, 이들 서비스의 提供에 대하여 一定한 報酬를 目的으로 하는 個人 또는 法人을 가르킨다」고 定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는一般的의 포워딩業務以外에 창고기능, 專門的인 여러가지 어드바이스(advice), 貨物의 移動에 대한 監視(attention)등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같이 포워더는 送荷人 또는 受荷人과 運送人 사이의 仲介人으로서의 立場에 있다.

英國에서도 運送의 手配, 關係書類의 作成등 以外에는 아무것도 하지않는 포워더가 적지 않으나 大部分의 포워더는 이들 기본적인 포워딩業務가 운송서비스나 기타 부수적인 서비스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部門에 종사하고 있다. 이 後者の 광범위한 役割에 있어서 英國의 포워더는 역시 荷主와 선박, 항공기, 철도 등의 資本集約的인 운송手段을 운영하는 者와의 사이에서 仲介者的立場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營業基盤은 점차 운송서비스의 利用者側에선 行動領域에서 서비스 供給主體者로서의 行動領域으로 变모하는, 이를바 운송서비스의 小買業者로서 活動하는 色彩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即 英國의 프레이트·포워더 가운데는 道路運送 및 船舶仲介人(ship broker)의 業務를 副業으로하는例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意味에서 프레이트·포워더라는 呼稱이 無分別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한편 美國의 경우一般的으로 포워더라고 불리우는 것에는 2가지 種類가 있다. 즉 聯邦海事委員會(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sup>9)</sup>로 부터 免許를 받아 포워딩業務를 行하는 者를 인디펜덴트·오션·프레이트·포워더(Independent Oc-

9) 美國聯邦政府의 運輸監督行政機關의 하나로 外航海運을 規制하는 1916年の Shipping Act, 1920年 및 1936年の Merchant Shipping Act 등의 광범위한 규제조항을 管制하기 위해 1961年に 設置되었으며, 5人の 委員(commissioner)로서 構成된다. 外航船社, NVOCC 및 independent ocean freight forwarder가 이의 管制對象이다.

ean Freight Forwarder)라고 부르며, 이 가운데 船舶을 直接所有하여 運航은 하지 않지만 獨自의 tariff를 設定하여 一定한 資格을 갖춘 者로서 全通船荷證券의 發行權을 부여받는 네·베슬·오페레이팅·카먼·캐리어(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by Water, NVOCC)<sup>10)</sup>가 있으며, 또 하나는 州間交通委員會(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ICC)<sup>11)</sup>로 부터 免許를 받아 州間交通에 있어서 公共運送人(common carrier)으로서의 報酬를 받고서 一貫運送責任을 지는 國內프레이트·포워더(domestic freight forwarder)이다. 인디펜던트·오션·프레이트·포워더가, 輸出貨物에 대해 荷主의 代理人으로서 船腹의 確保, 通關, 貨物의 alongside, 貨物保險의 付保, cargo claim 手續의 代行 등을 行하지만, 固有의 운송책임을 지지않는 反面, NVOCC는 船舶을 所有·運航은 않지만 自己의 名義와 責任으로 door-to-door service의 全運送區間의 運送을 引受하는 것이다. 國내프레이트·포워더는, 自己 스스로 運送은 行하지 않지만 小量貨物(LCL cargo)의 운송을 自己의 責任으로 引受하고 이를 carload로 統合하여 實際運送人에게 委託한다는 点에서 混載業者(consolidator)로서 解釋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先進諸國의 프레이트·포워더와 비슷한 概念을 海上運送事業法(第2條8項) 및 自動車運送事業法(第2條4項)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 法에서 海上運送周業旋이라 함은 自己의 名義로 海上에서의 船舶에 의한 運送의 周旋을 하는 事業을 말한다.」, 「이 法에서 自動車運送周旋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應하여 有償으로 다음에 揭記하는 行爲를 하는 事業을 말한다. ① 自己名義로 써 하는 自動車運送事業者로 부터의 貨物運送의 中繼 또는 受取 ② 他人의 名義로 써 하는 自動車運送事業者에 의 貨物運送의 委託 또는 自動車運送事業者로부터의 運送貨物의 受取 ③ 自動車運送事業者가 행하는 運送을 利用하는 貨物의 運送」이라고 각각 面面하고 抽象的으로 定義하고 있음 뿐이다.

## 2. 海陸複合運送 主體者로서의 프레이트·포워더

海陸複合運送은 一定한 규격의 컨테이너라는 用器의 사용을 前提로 陸上·海上·港灣의 各種 운송수단을 有機的으로 結合한 一貫된 運送体系 즉 「door to door service」를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荷主의 立場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의 運送인이 단 한번의 運送契約만으로 責任을 지게 됨으로 더욱 便利하게 될것이다.勿論 이 경우의 運送人은 船舶會社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鐵道會社, 航空會社, 프레이트·포워드, 컨테이너 貸與(container lease) 會社 등 어느 것을 莫論하고 確實한 運送責任을 질수 있는 모든 運送人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運送人은 全運送區間에 걸치는 全通船荷證券(through B/L)을 누가 發행할 것이냐에 歸結된다. 프레이트·포워더 가운데 全通船荷證券을 發行할 수 있는 것은 美聯邦海事委員會(FMC)로 부터 免許를 받은 一定한 有資格의 NVOCC이다. 이는 運送手段을 가지지 않는것이 特徵이며, 따라서 實際 船舶을 運航하는 것은 아니고, 獨自의 tariff를 設定하여, 實際運送人인 船舶會社를 下請으로 하여 運送責任을 지고서 door-to door service이 運送을 引受하는 것이다. 즉 NVOCC는 全通船荷證券을 發행할수 있는 權限이 부여되어 있다. 北大西洋運賃同盟의 規則에는 프레이트·포워더가 全通船荷證券을 發행하는 경우 貨物에 대한 海上運送의 全責任은 NVOCC가 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12)</sup>

NVOCC의 活動이 아주 활발한 것은 유럽에서이며, SLB<sup>13)</sup>의 경우, 프레이트·포워더를 NVOCC

10) FMC General Order 46 C. F. R. 531 Sec. 510.22(C)

11) 全美國의 鐵道, 道路, 內輸運送에 대하여 여러가지 規制를 하는 機關으로 1887年에 設置되었다.

12) North Atlantic Continental Freight Conference, Tariff No. (27)FMC-2

13) 海陸複合運送의 概念에서 海上/陸上/海上으로 이루어지는 運送區間中 中間區間의 陸路運送區間을 媒介로하여 貨物의 移積 없이 最終目的地까지 어떤 運送主体에 의해 運送되는 것을 「랜드·브릿지·서비스」(Land Bridge Service)라고 한다. 여기에는 現在 北美大陸을 媒介로하는 極東/歐洲間의 「유·에쓰·랜드

로 通稱하고 있는데, 義國의 國內法인 海事法에 根據한 이 概念이 鐵道爲主의 SLB 시스템에서도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立法趣旨대로라면, 프레이트·포워드 가운데 制限的으로 불리워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妥當한 表現이 아닌가 생각된다.

SLB 시스템下에서 이 NVOCC는 全소련對外運送公團(V/O Soyuzvneshtrans; SVT)<sup>14)</sup>과의 個別的인 契約에 의하여 이와같이 SVT와 契約한 歐州, 極東 및 中近東側의 NVOCC들은 自己들의 代理店을 相對側에 設定하던가 또는 相當側의 NVOCC와 提携로 營業活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SVT와 直接 交涉할 수 없는 形便이어서 日本 및 歐州의 NVOCC의 代理店들만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한편 國際物品複合運送에 關한 條約案(Projet de Convention Sur le Transport Internationale Combine de Marchandises) 이른바 TCM 條約案에서 규정하고 있는 運送人인 CTO(combined transport operator)에 NVOCC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도 이에 대한 意見이 엇갈리고 있는 형편이고, 더구나 本條約案 自體가 현재 自紙化 되어 있다.<sup>15)</sup>

### 3. 프레이트·포워드의 運送責任

單一運送契約으로서 複數의 運送人の 關與하는 운송을 全通運送(through transport)이라 하며, 海陸複合運送도 이 全通運送의 一種이다.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運送手段(예컨대, 철도, 트럭, 선박)등으로서 行해지는 海陸複合運送의 責任形態는 다음 3가지로 分類된다.<sup>16)</sup>

#### (1) 各運送區間 分割責任型

運送인이 直接 運送한 區間에 대해서만 책임을 치는 形態로서, 책임범위는 종래와 같이 tackle to tackle] 아니고 sea terminal to sea terminal이다. Sea-Land, Container Marine Line(CML), Matson 등의 美船社는 이 形態를 採用하고 있다.

(2) 全運送區間單一責任 各區間異種責任 原則型(network liability) 運送人이 全運送區間に 대해 責任을 지되, 各運送區間마다 既存의 責任原則을 適用하는 것으로, Cunard(英) Holland-America(和), Swedish-America, Swedish-Transatlantic(스웨덴), Wallenius(獨) 등으로 이루어진 컨테이너共同運航會社(Consortium)인 Atlantic Container Line (ACL)이 採用한 形態이다. 이러한 形態의 責任下에 海陸一貫運送을 引受한 運送人은, 海上에 있어서는 해一그規則(Hague Rules)<sup>17)</sup>

• 브릿지(U.S. Land Bridge), 中近東/歐洲間의 「오비·랜드·브릿지·트랜스포테이션」(Over Land Bridge Transportation) 및 시베리아 鐵道를 이용하는 極東/歐洲間의 「시베리안·랜드·브릿지」(Siberian Land Bridge; SLB)가 있고, 한편 極東/美西海岸은 海上, 美西海岸에서 美東海岸 및 걸프(Gulf) 地域까지는 陸上을 이용하는 「미니·랜드·브릿지」(Mini Land Bridge; MLB)가 있다.

14) 소련貿省의 下部機關으로 外國貿易에 關한 運送部門을 담당하며, 모스크바(Moscow)에 本據를 두고 있다.

15) 1971年 11月의 國際聯合經濟社會理事會(Economic Social Council; ECOSOC)의 決定에 따라서, 1972年 11月에 ECOSOC와 政府間海事協議機構(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IMCO)가 共同으로 主催한 國際컨테이너會議에서 採決될 것으로 期待되었던 TCM 條約案은, 이案의 作成이 先進國의 立場만을 고려했다는 点과 開發途上國에 미치는 社會的·經濟的인 影響의 檢討가 不充分하였다는 点 등의 理由로 開發途上國들의 強한 反撥에 부딪혀 마침내 廢案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現 추세로는 包括의 概念으로서의 CTO가 國際間의 公式用語로서 通用될 것으로 観測된다.

16) 谷川久・高田四郎・小林友次, ユンテナB/L, 勸草書房, 東京, 1969, p. 15.

17) 이른바 船荷證券統一條約(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으로 1968年 2月 23日 Brussels에서 署名된 Hague Rules를 改正하는 議定書(Protocol)과 1977年 6月 23日 發効要件인 「100萬G/T 以上의 船腹을 保有한 國家에 의한 最小限 5個國의 寄託을 포함하여 10個國에 의한 批准書 또는 加入國의 寄託」을 염어 發効하였다. 이 議定書는 運送人の 貨物에 대한 責任限度額의 引上 및 컨테이너에 關한 規定의 新設 등에 特징이 있지만, 運送人の 責任이 加重되는

陸上運送間に 있어서는 道路運送의 경우 國際道路物品運送條約(CMR)<sup>18)</sup> 또 鐵道運送의 경우 國際鐵道物品運送契約(CIM)<sup>19)</sup>의 規定에 따르게 된다.

### (3) 全運送區間單一責任 全區間同一責任原則型(uniform system of liability)

全運送區間을 통해서 同一한 内容의 책임을 運送人이 荷主에 대하여 지는 形態로 不可抗力 以外의 若干의 免責事由밖에 認定되지 않는 無過失責任原則에 가까운型이며 美國에서 규모가 제일 큰 domestic freight forwarder인 UC&D (Universal Carloading & Distributing Inc.)와 鐵道小荷物을 取扱하는, 通運會社인 REA(Railway Express Agency, Inc.) 또 OCL (Overseas Containers, Ltd.) 및 ACT (Associated Container Transportaion, Ltd.)<sup>20)</sup> 등이 採用하였다.

이와같이 在來式의 傳統的인 包裝方法에 의한 貨物의 全通運送에서와 마찬가지로 運送區間을 明確히 하여, 該當 運送人에 對하여 貨物의 損傷・滅失을 責任지우는 것이 각運送區間分割責任型이다. 그러나 海陸複合運送의 경우, 荷主에 依해入箱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自体의 損傷으로 因한 内容物의 損害가 明白한 경우를 제외하고, 最終引渡地点에서 解體되어, 그때야 비로소 内容物의 損害가 처음으로 發見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concealed damage에 경우 어느 運送人에賠償을 청구해야 되겠는가 하는 困難한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海陸複合運送에 있어서는 荷主가 損害賠償을 할 相對方을 明確히 하기 위하여 어느 한 사람의 運送人에게 全運送區間을 통하여 損害賠償責任을 集中할 必要가 생기며, 여기에 根據한 것이 全運送區間單一責任型(single through responsibility)이다. 이 가운데서 각 運送區間의 여러가지 責任原則을 實際의 으로妥協하여 각區間의 既存責任原則을 調和・共存시킨 것이 network liability system이며, 이 原則上 荷主로부터의 크레임에 대하여 一貫運送元請人은 損害發生箇所가 乎였할 때는 該當區間의 책임원칙을 適用하고 또 concealed damage에 대하여는 別途로 定해진 책임원칙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荷主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책임원칙에는 損害의 内容이 같다하여도 損害發生區間의 如何에 따라 또 그손해가 concealed damage인가 또는 아닌가에 따라 適用되는 原則이 다르며, 따라서 運送人の 免責條件이나 賠償額도 달라질 수 있는不合理한 点도 있어, 나아가서 全運送區間을 通해서 同一責任原則으로 하는 uniform system of liability가 있지만, 너무도 理論的으로 徹底하여 一貫運送元請人에게 加혹한 型이다.

위의 세가지 責任原則 가운데, 實際의 海陸複合運送에 있어서는 一貫運送元請人이 어느 것을 擇하는가 하는것이 問題일 뿐이나, 複合運送條約이 發効되지 않고 있는 實際에 비추어 原則의 問題가 대두되어 있는 것이다. 즉 在來船의 運送体系上으로는 別個로 存在하던 運送人の 責任体系를 이명계 調整할것인가가 그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國際海上運送에 있어서 運送物에 대한 責任은 해一그 規則에 依據하고 있는 反面, 海陸複合運送人에 있어서 原運送人の 責任下에 運送되는 内陸에는 別個의 責任形態가 存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全通船荷證券의 流通에도 問題가 있다.

는 故로 多數의 先進海運國이 그의 批准을 주저하는 바, 最近 開發途上國이나 荷主國의 이익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Hague Rules에서 認定하고 있는 航海過失免責制度를 폐지하고 운송인의 책임을大幅으로 加重한 UNICITRAL 草案(新 해一그 規則)이 빠르면 1978年 國聯外交會議에서 調印될 가능성이 있어, 이 樣한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서둘러 先進海運國이 發効시킨 것이다.

- 18) Convention relative au contrat de Transport Internationale de Marchandises par Route-1956年 5月 19日 제네바에서 署名되었고, 英國을 爲始하여 7個國加入으로 1961年 發効된, 道路上에서 國際物品運送에 관한 條約이다. 이 조약은 2國間의 自動車運送으로서 적어도 그 中 하나가 締約國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19) Convention Internationale Concernantele Transport des Marchandises par Chemins de Fer-1952年 10月 25日 西歐 22個國에 의해 署名되어 1956年 發効된 것으로 2個國 이상의 締約國 사이에 連結된 鐵道路線을 이용한 運送에 있어서 全通運送狀(through consignment note)이 발행될 경우에 적용된다. CMR와 같이 嚴格責任(strict liability)을 적용한다는 취지를 規定하고 있다.
- 20) OCL은 P&O, Alfred Holt, British & Common Wealth, Furness Withy 등 또 ACT는 Cunard, Ellerman, Blue Star, Harrison, Ben Lines 등 諸社가 各己構成하는 Consortium이다.

즉 「貨換信用狀에 관한 統一規則 및 構例1962」는 거의 17條에서 프레이트·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拒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18條에서는 船積을 要件으로 하고 있어 「from door」라는 海陸一貫運送의 強點을 制約하고 있다. 이와같이 信用狀統一規則과 相應되는 複合運送關係의 法制上의 問題는 TCM 條約案이 廢案된 最近에도 계속 國際的인 協議를 通過 成案을 推進하고 있다.<sup>21)</sup> 따라서 原則上 本 시스템을 利用하려면 信用狀에 B/L을 貨換이음의 捏保로서 特認한다는 表明이 있어야 하나, 오늘날 포워더에 의한 運送이 보편화되고 있는 西歐諸國의 商社들은 特認이 없어도 運送遲延이나 疏疵가 없는 限 支拂拒絕은 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歐州에 있어서와 같은 複合運送体系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따라서 荷主의 倉庫/터미널 間의 内陸運送은 荷主의 責任과 費用負擔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運送人의 責任은 sea terminal/sea terminal이다. 단지 SLB 시스템에서 一部 NVOCC에 의해 海陸複合一貫運送이 行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 경우 클레임이 發生하면, 당연히 全通船荷證券의 發行者인 NVOCC가 B/L의 約款에 따라 荷主에게 責任을 지는 한편, NVOCC는 損害가 發生한 區間의 運送人에게 求償을 하게된다. 즉 SLB의 NVOCC는 위의 3가지 責任形態中 두번째의 network system을 取하고 있다. 例컨데 현재의 韓日間의 피이더 시스템(feeder system) 下에서의 損害는 피이더의 船主가 NVOCC에게 責任을 진다.

#### IV. 프레이트·포워더의 機能

海陸複合運送에 있어서 프레이트·포워더는 2가지 重要한 機能을 발휘하고 있다. 그 中에서 한가지는 2國間의 海陸複合運送의 경우, 포워더가 相對方 國家의 포워더와 提携로써 全運區間의 一貫運送責任을 지는 運送主体者로서의 機能을 갖는 일이며, 또 한가지는 컨테이너 1個에 가득 차지 않는 小量貨物(LCL 貨物)을 集貨하여, 이를 컨테이너에 混載하는 業務를 行하는 機能을 갖는 일이다. 後者の 機能이, 前者の 機能과 結合될 때 포워더는前述의 NVOCC로서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다. 즉 LCL 貨物의 경우 이를 포워더 또는 混載業者는 相對國의 포워더와 提携함으로서 LCL 貨物의 一貫運送을 行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船舶會社는 下請業者的 立場에 서게된다. 荷主自身에 의하여 貨物이 컨테이너에 넣어진 CL 貨物은 당연히 트레일러로써 船舶會社의 터미널(terminal)까지 운반되지만, 만약 LCL 貨物도 포워더에 의해 混載되어 트레일러로써 船舶會社의 터미널까지 운반된다면, 船舶會社는 하루에 몇千톤 또는 몇萬ton의 貨物이라도 處理할 수 있을 것이다. 컨테이너의 大量運送에는, 이와 같이 CL 貨物과 LCL貨物을 總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能率이 높고 코스트가 낮은 運送手段의 提供이 필요하며, 이로써 船舶會社는 보다 많은 貨物을 誘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포워더가 提携함으로써 서로 代理人이 되어 一貫責任運送을 하게 되면 單一料率과 간단한 書類로써<sup>22)</sup> 운송의 手配가 가능해지며 또 運送責任의 所在가 明確해져서, 輸出入 共히 포워더에 의한 運送의 強點이 되고 있다. 한편 序論에서도 밝혔듯이 프레이트·포워더는 各國의 法制에 따

21) TCM 條約案의 廢案後 U.N.에서는 이 問題를 國聯貿易開發會議(UNCTAD)에 넘겨 1973年 10月, 1974年 11月, 1976年 2月, 1977年 1月의 4次會議를 열어 새로운 條約案 즉 Preliminary Draft of a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의 起草作業을 서두르고 있다.

22) 유럽 諸國의 포워더間의 協調를 통한相互利益의 增進을 目的으로 1926年에 設立되어 現在 國際的인 포워더의 組織으로 까지 發展된 FIATA(International Federation of Forwarding Agents Associations)에서는 複合運送書類로써 FIATA Combined Transport B/L, FCR(Forwarding Agents Certificate of Receipt) 및 FCT(Forwarding Agents Certificate of Transport)의 3種類를 発表하여, 오늘날은 이들에 따라 각 포워더가 自社의 樣式을 制定하여 使用하고 있는 수가 많다.

라 그의 概念이나 法的地位에 있어서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며,<sup>23)</sup> 포워더가 提供하는 業務의 内容은 實로 多樣하다. 이 가운데 포워더의 サービス를 利用하는 者들에게 最善의 利益을 위해 가장 適切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이에 필요한 모든 代行業務를 하는 것은 가장 具体的인 機能이 되고 있다. 그러나 포워더 自体가 지니는 特殊性과 有用性에 비추어 조금씩 그의 様相이 变모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一般的으로 포워딩 業務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本船과의 貨物引受渡： 가장 基本的인 機能으로 輸出業者 또는 送荷人の 委託에 따라 수출화물을 本船에 引渡하거나, 輸入業者 또는 受荷人の 委託에 따라 輸入貨物을 本船으로부터 引受한다.

(2) 專門的인 어드바이스(advice)：輸出業者 또는 送荷人の 要請에 따라서 貨物의 全運送區間에 걸치는 所要費用, 所要時間, 信賴性 및 經濟性에 비추어 가장 適切한 운송루트(route)를 어드바이스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荷主의 立場에서 보면 輸出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는 運賃을 포함한 商品價格를 正確히 算出할 수 있게 된다.

(3) 運送의 手配：輸出業者 또는 送荷人을 代身하여 全運送區間에 걸치는 運送機關(예컨대, 船舶, 航空機, 트럭, 또는 鐵道)에 필요한 スペース를 確保하고, 이를 運送機關에 화물을 引渡하거나, 目的地(destination)의 事務所 또는 代理店에 연락하여 貨物引渡時 滯延이 생기지 않도록 手配한다.

(4) 船積關係書類의 作成：포워더에게 關係되는 書類 또는 取扱事務는 ①船荷證券 ②航空證券 또는 이와 類似한 書類, ③通關書類, ④原產地證明書, ⑤保險證券, ⑥船積노우트, ⑦콜링·포워더·노티스(calling forwarder notice), ⑧콜렉션·오더(collection order) 등인 바, 이를 서류들을 포워더가 作成하든가 또는 荷主가 作成하는 경우 효과적인 어드바이스를 한다.

(5) 通關手續：主要한 항만이나 空港에 事務所를 두고 稅關員과 긴밀한 접촉을 가지면서, 荷主를 代身하여 通關手續을 한다.

(6) 運賃 및 其他 費用의 立替：포워더와 荷主間に 通常의 去來關係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포워더는 顧客을 代身하여 모든 費用을 立替하여 支拂한다. 輸出入業者는 통상 船舶會社, 航空會社 기타 運送人 및 荷役業者, 칸테이너, 保管施設, 기타 設費 등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포워더를 通하여 이루이지는 경우, 이 費用에 대한 輸出入業者の 支拂은 포워더에게 一括的으로 支拂함으로써 手續節次가 簡化된다. 이와 方便하여 海外의 去來關係를 通해서 COD (cash on delivery)에 便宜를 제공하는 수도 있으며, 또한 포워더는 顧客을 위해서 L/C나 外貨의 賣買 등에 관한 銀行에의 手配를 하기도 한다.

(7) 包裝 및 倉庫保管：포워더는 運送手段 또는 目的地에 適合한 包裝을 할 수 있는 獨自의 包裝會社를 가지는 수도 있으며, 화물의 包裝方法에 관해서 운송수단이나 目的地에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을 荷主에게 어드바이스한다. 또한 포워더는 主體者로서의 運送이나 LCL 貨物의 統合分配 혹은 混載業務를 行하는 當然한 結果로서 자기의 換積倉庫를 소유하여 一時的인 대지 短期的인 保管서비스도 提供한다.

(8) 保險의 手配：포워더는 貨物保險에 관계되는 가장 有利한 保險形態, 保險金額, 保險條件 등에 精通하고 있어 荷主를 代身하여 保險手配를 할 수 있으며, 運送貨物의 事故發生時 荷主를 立파

23) 美國의 경우, Murr는 포워더의 가장 보편적이고 정규적인 業務로서 다음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즉 ①輸出業者에게 船積 및 市場狀態의 어드바이스(advice) ②外國通信文의 번역 ③商品供給源의 調査報告 ④外國의 賣主를 代理하여 賣主와의 접촉 및 指定日字에 船積手配 ⑤送荷人을 대리하여 包裝, 荷印表示등의 手配 ⑥가장 경제적인 内陸運送의 手配 ⑦필요한 경우 本船과 連絡을 위한 貨物의 트레이싱(tracing) ⑧本船에의 船積手配 ⑨貨物의 統合 ⑩通關手續 ⑪貨物保險 付保手配 ⑫領事送狀 作成 ⑬本船스페이스(Space)의 確保 ⑭銀行關係書類의 作成 등 Alfred Murr, Ibid. pp. 20-21.

적으로 補助한다

(9) 貨物의 統合·分配, 混載 서비스: 傳統的인 代行機關이 아닌 運送主体者로서의 포워더의 業務는 화물의 統合·分配, 混載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運送主体者로서의 業務가 포워더의 重要한 機能의 하나라는 것은前述한 바와 같다.

(10) 管理業者, 分配業者: 또한 포워더는 受荷人을 위한 화물의 管理業者(controller) 및 分配業者(distributer)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前者は 「door to door」의 全運送過程에 걸쳐 화물의 安全과 나아가서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荷主를 대신해서 이를 監視하는 일이며, 後者は 大量으로 수입되는 화물을 一括하여 通關한 後各地에 흩어져 있는 受荷人에게 配送, 引渡하는 일이다.

(11) 市場調査: 海外의 去來網을 통해서 外國의 바이어(buyer)를 紹介하기도 하고 또 國內市場에 관한 情報를 수집하는 등 여러가지로 輸出入業者를 支援하고 있다.

## V. 프레이트·포워더의 役割

### 1. 프레이트·포워더의 利用에 따르는 利点.

海陸複合運送에 있어서, 프레이트·포워더를 利用함으로써 利点이 생기는 것은 CL 화물이나 또는 LCL 貨物 모두에게 適用이 된다. 이 가운데 LCL 貨物의 경우 荷主가 實際로 컨테이너 運送에 의해서 利点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의 内陸depot(inland depot)에서 混載되는 경우이다. 포워더는 相對國의 포워더와의 提携로 輸出國 및 輸入國의 각己에 있어서, 陸上運賃의 最低重量 以上이 되도록 많은 荷主로부터 貨物을 集貨하여, 荷主가 小量貨物을 單獨으로 운송한 경우의 陸上運賃 보다도 컨테이너에 의한 混載로써 운송된 경우의 陸上運賃 쪽이 低率이 되도록 混載하는 것이다.

즉 陸上運賃体系의 大量割引를 利用하는 것이다.前述한 바와 같이 海陸複合運送에 있어서 프레이트·포워더는 運送主体者이며, 全運送區間의 運送責任을 지는 機能과 混載業務를 行하는 2가지 機能을 가지고 있다. LCL 貨物의 荷主에 대해 생각해도, 포워더의 서비스에 의해 簡明한 全通運賃(through rate)과 一貫運送責任을 内容으로 하는 複合運送을, 安全, 確實, 迅速 그리고 低廉으로 누릴 수 있다면, 利点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實際에 있어서도 LCL 貨物에 대하여는 一貫運送責任을 지고서 컨테이너 運送을 하는 國際複合運送業者(NVOCC)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것이 이를 바 포워더의 業務이며, 運送手段을 가지지 않는다는 点에서 本來의 運送業者(海運業者, 陸運業者)로 부터 區別된다. 이런 故로 運送業者가 신청하는 海陸全通運賃表의 경우는, 다른 운송기관의 運賃一部를 吸收하거나, 運送者自身의 通常의 運賃率을 引下하여 화물을誘引하는 不公正한 方法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들 운송기관을 가지지 않는 國際複合運送業者가 提供하는 運賃表는 각己 운송기관이 提供하는 運賃率의 合計 以下로는 내려가지 않으므로 問題는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國際複合運送業者間의 경쟁 결과 각己 운송기관이 支拂하는 手數料를 荷主에게 리베이트(rebate) 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今後 海運業者 또는 海運同盟의 方針如何에 따라서 이 國際複合運送業者는 크게 발전할 것이며, 小量貨物, 混載貨物의 컨테이너運送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담당할 잠재력(potential)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海運同盟에 따라서는 포워더에 의한 混載를 장려하는 同盟도 있다.<sup>24)</sup>勿論, 포워더의 이용에 따르는 혜택은 이처럼 荷主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고 運送人, 稅關 및 기타 公共機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24) 北大西洋大陸運賃同盟의 경우 포워더에 의한 混載를 장려하기 위해 포워더를 포함한 混載業者에게 海上運賃의 30%를 混載手數料로서 支拂하고 있다. North Atlantic Continental Freight Conference Tariff No. (28) FMC-3, Rules and Regulations, U.11.

비친다.

또한 포워더의 機能과 관련된 問題이지만, 荷主가 포워더로 부터 얻는 最大的 利益은, 복잡한 國際貨物의 流通問題를 포워더에게 떠맡긴다는 것이다. 즉 全運送區間에 걸친 一貫運送에 관하여 荷主는, 貨物이 自己의 構內를 出發한 以後에는 關心을 갖지 않아도 되며, 本然의 輸出業務에만 全的으로 集中할 수 있다. 한편 荷主는 貨物의 受取에 必要한 書類의 作成 및 節次에 관하여 상세한 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고, 自己들의 日常業務에만 專念하고 있으면, 貨物의 到着을 포워더가 알려주며, 貨物을 荷主의 門前까지 配送해준다. 즉 荷主는 關係書類와 예상되는 通關費用만 미리 포워더에게 보내면 通關貨物을 構內에서 受取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後日 관련된 費用을 망라한 單一의 請求書를 받는다. 또한 포워딩業務는 高度의 競争적인 產業으로 포워더는 船舶이나 航空機의 스페이스를 大量으로 購入함으로써 얻은 利益을 利用者인 荷主에게 配分하고 있다.

## 2. 各國의 이에 對한 規制

### (1) 英國

英國에 있어서 포워더의 業務範圍, 資格基準, 所要資本, 訓練 등에 관한 規制制度는 全히 없으며, 포워딩業務에의 參加의 自由가 인정되고 있다. 이는 業界의 能率을 자극하는 좋은 手段이 될 수도 있지만, 過當競爭을 招來할 위험도 또한 도사리고 있으나, 現在 英國의 포워더業界는 이러한 法의 規制措置를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業界團體인 프레이트·포워더 協會(The Institute of Freight Forwarders Ltd., IFF)도 아직까지 業界를 콘트롤(control)할 實質的인 權限이 주어져 있지 않다. 이 協會에 대한 加入은 自由이며, 加入에 따라 特別한 혜택이나 特權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포워더의 서서비스를 이용하는 者들도, 그 포워더가 IFF의 會員인가 아닌가의 與否에 關心을 別로 表示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IFF는 設立以後 業界의 專門能力의 標準을 向上시키는 데에 기여를 하였고, 그의 活動은 높이 評價되고 있다.

포워더에 대하여 規制를 엄격히 하고 있는 나라는 美國이며, 기타 여러 나라에서는 美國에서와 같은 종류의 또는 程度의 포워더 規制는 없지만 通關業者(custom broker)에 대한 규제는 一般化되고 있다.例컨대,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카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認可制로 하고 있다.

### (2) 美國

美國에 있어서 포워더의 活動은 U. S. Customs, Federal Maritime Commission,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Civil Aeronautics Board의 4機關에 의해서 엄격히 規制되고 있다.

① FMC: FMC는, 運送主体者로서의 또는 荷主의 代行者로서의 포워더를 규제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運送서비스를 手配하여 이를 利用하여 自己의 名義로 荷主와 運送契約을 체결한 後 安全運送의 책임을 引受하는 NVOCC가 활약하고 있지만, 이들의 大部分은 主로 ICC로부터 免許를 받은 道路運送人이며, 종래의 内陸道路運送 및 鐵道運送貨物의 混載業者 活動의 延長으로서 現在 컨테이너貨物의 混載業務를 主要한 任務로 하고 있다. 이들 NVOCC는 FMC에 tariff를 file하여 FMC의 규칙 및 Shipping Act의 適用을 받아야 한다.

한편 IOFF(Independent Ocean Freight Forwarder)은 FMC로부터 免許를 받으며, 特別한 規制를 받는다. 荷主는 貨物의 運送에 관連된 여러 서서비스를 自己가 스스로 용이하게 行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荷主에게 直接 영향을 미치는 惡行으로부터의 荷主保護의 概念이 이 規制의 目的이다.

② ICC: ICC는 州間의 道路, 鐵道 및 内陸水路運送의 規制를 行하며, 또한 ICC는 프레이트·포워더를 貨物의 混載業務를 行하며, 貨物의 受取로부터 目的地까지의 運送責任을 지고, 이를 위하

여 마찬가지 ICC의 規制를 받고 있는 運送人の 서이비스의 全部 또는一部를 이용하여, 州의 交通에 종사하는 者라고 定義하고 있다.

規制의 主된 目的是 能률적으로 滿足할 만한 運送시스템을 促進하는 것이며, 그 認可基準은 申請者가 申込한 서이비스를 適切한가 또는 그 能力を 지니고 있는가이다.

③ U. S. Customs: 他人을 위하여 通關業務를 行하는 個人 또는 法人은 U. S. Customs로부터 認可를 받아야 하며, 이 認可를 받고 있는 많은 custom broker는 同時に プレイ트·포워더이기도 하다. 이 認可의 目的是 無能力 또는 不誠實한 業者로부터 一般大衆을 보호하고, 이 業務의 惡用을 防止하기 위함이다, 이 認可를 받기 위하여 申請者は 關稅法, 通關規則 및 手續 등에 관한 試験에 合格하여야 하고, 申請者の 業務上의 誠實性, 誤判 및 性格등에 관한 調査에도 合格하여야 한다. 또 法人 또는 合名會社의 申請者は 2人 以上的 認可職員을 確保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免許取得職員은 다른 종업원을 감독하고 콘트롤할 責任을 진다.

④ CAB: air freight forwarder는 航空貨物의 統合分配 또는 그의 準備를 하여 화물의 受取地點에서 目的地까지의 運送責任을 지며, 이와 같은 運送의 全部 또는一部에 위해 直接航空運送人の 運送서이비스를 利用하는 間接航空運送( indirect air carrier, non-aircraft operating)이다. 이들은 國內포워더와 國際포워더의 2가지가 있으며, 모두 CAB의 規制를 받는다. 이들은 詳細한 tariff를 CAB에 file함과 同時に, 화물의 클레임, 人的損害 및 其他 財產損害에 對備하여 각己 最低限度額까지 保險에 들 것을 義務化하고 있다.

## VII. 結論

輸出入貨物의 運送手續을 代行하고, 各種의 運送機關에 의한 運送活動과 荷役活動의 有機的인 結合, 小量貨物(LCL 貨物)의 統合·分配等의 機能을 가지는 プレイ트·포워더는, 그 自体가 지니는 特殊性과 有用性으로써 一國의 貿易發展은勿論 海運의 發展에도 中요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近年 運送의 技術과 시스템의 進展에 따라 傳統的인 在來의 포워더 業務로부터 脱皮하여, 새로운 需要에 對應하는 業界의 서이비스 内容 및 標準을 끊임없이 再檢討하며, 複合 一貫運送의 一翼을 담당하는 產業体制에로의 再編制를 함으로써, 그의 存在價值를 充分히 評價받아야 할 것이다. 즉 포워더 業務의 高度化關聯業務에의 進出, 業務提携 등을 통하여, 運送合理化에 충분히 부응하는 營業基盤을 가지고서, 새로운 포워더의 体制確立에 努力하여야 한다.

한편 荷主의 立場에서 볼 때, 運送手段이나 輸出入口의 關稅等에 精通해 있고, 全運送過程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問題에 관해 高度로 專門化된 知識을 가진 포워더의 서이비스를 利用하게 되면, 自己 本然의 輸出入業務에만 專念할 수 있어 그 만큼 能率의이다. 오늘날 輸出立國이 國策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貿易業者들은 포워더에 대한 認識을 충분히 하고, 이를 効果的으로 함으로써 격심한 國際競爭에서 승산이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Alfred Murr, Export/Import Traffic Management and Forwarding, Cornell Maritime Press, Cambridge, 1974
- Gerald H. Ullman, The Ocean Freight Forwarder, the Exporter and the Law, Cornell Maritime Press, Cambridge, 1967
- Herman D. Tabak, Cargo Containers, 1970
- G. Van Der Burg, Containerization, 1969
- 飯田秀雄, 海陸複合輸送の研究, 成山堂, 東京, 1973
- 飯田秀雄, ユンテナ輸送の原点, 成山堂, 東京, 1973
- 中尾朔郎・三浦節, 海上ユンテナ輸送實務指針, 海文堂, 東京, 1970
- 谷川久・高田四郎・小林友次, ユンテナ B/L, 勲草書房, 東京, 1969
- 高村忠也, 國際海上ユンテナ輸送をめぐる12章, 成山堂, 東京, 1968
- 松本好雄, ユンテナの輸送實務, 成山堂, 東京, 1968
- 日本海運集會所, 海運(月刊)
- 韓國海事問題研究所, 海洋韓國(月刊)
- Korea Shipping Gazette, Shipping Gazette(週刊)



